

창원지방법원 2022. 2. 10 선고 2020나6288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경남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조종만

피고, 피항소인 A

변 론 종 결 2022. 1. 13.

판 결 선 고 2022. 2. 10.

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. 9. 24. 선고 2020가단101259 판결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2. 피고와 C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전 430㎡에 관하여 2018. 10. 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3. 피고는 C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. 10. 8. 접수 제389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주문과 같다(다만, 원고는 선택적 청구로 ①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와 ② 통정허위표시 무효에 기한 청구를 하면서, 위와 같은 순서로 판단을 구한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 판결 2쪽 12행 “이행권고결정은”과 “2012. 2. 9.” 사이에 “C에게 2012. 1. 25. 송달되었고,”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 2쪽 13행부터 18행까지 부분(라.항)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라. C은 2005. 12.경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전 430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를 상속하였으나,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, 2018. 10. 8.경에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. 10. 8. 접수 제38943호로 2005. 12. 1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피고를 위하여 위 법원 2018. 10. 8. 접수 제38944호로 2018. 10. 8.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5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(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’, 그 근저당권을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, 그 설정계약을 ‘이 사건 설정계약’이라 한다).

2. 원고의 주장

C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,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, 원고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, 지인인 피고와 통모 내지 협의하여,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다. 따라서 이 사건 설정계약은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렇지 않더라도,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4호증의 기재,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, 제1심 법원의 경상남도(토지정보과)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,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,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5. 12.경 상속 받았지만, 원고 등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,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, 2013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존재를 알리고 돈을 빌려쓰다가, 2018. 10.경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인바,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며, 또한 자신이 은닉 중이던 유일한 재산에 관해 특정 채권자 1인과 협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그 채권자에게 부동산 가액에 가까운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실질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,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.

①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39,560,000원이다.

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C이 소유하고 있던 1992년식 봉고 화물차는 제작된 지 26년이나 된 차량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(한편, C 소유의 2019년식 봉고 화물차는 2019. 7.경 취득한 차량으로,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보유하던 적극재산이 아니다).

② 원고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금액은 “4,349,741원 및 그 중 4,349,708원에 대하여 2011. 3. 24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”으로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원리금은 약 9,929,000원에 달한다.

③ C의 차량 압류등록 상태를 보면, C은 적어도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지방세 등의 체납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 C은 차량 압류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설정계약 후인 2019. 7.경 다른 차량을 새로 구입하였는데 그 차량에 대하여도 구입 한 달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록이, 그로부터 몇 달 후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이루어졌다.

④ C은 2011. 10. 기준으로 무려 91,527,000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다(다만, 마산세무서 과세정보회신이 온 2021. 12. 기준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).

⑤ 한편,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, C은 2013년경 피고의 아버지에 대해 1,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와, 피고에 대해 1,6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다는 것이다.

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면서(이하 ‘관련 신청사건’이라 한다) “㉠ C이 형편이 어려워 피고 아버지의 공사비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궁리 끝에 2013년경 ‘자신에게 토지가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저당을 설정해 주겠다’고 제의하여,

㉡ 피고는 토지의 위치와 현황 등을 파악해 보았더니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. 9.~10.경 C이 지정한 그의 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일부 돈을 빌려주었으며, ㉢ C이 저당권 설정을 지체하여 나머지 돈을 더 주지 않고 있다가 2018. 10.경 비로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고 2018. 10.~11.경 나머지 돈을 빌려준 것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.

⑦ 피고는 관련 신청사건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 받고 2013년경 일부 돈을 빌려주었는데 C이 2018년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, C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받게 된 경위 설명이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이 무려 5년이나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의 위 설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, 오히려 피고는 2013년경부터 이미 C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이전등기 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후 2018년경 C이 이전등기를 하자마자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.

2)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의하면,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.

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아버지의 C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대여를 해 주기로 하고 정당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것이므로, 자신은

선익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년경부터 이미 C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이전등기 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2018년경 C이 이전등기를 하자마자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보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원고는 선택적 청구 중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우선 판단해 달라는 취지이므로, 위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한 청구(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선택할 수 있다)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, 이 사건 설정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민정, 판사 서경원, 판사 진민희